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9.29.(목) 11:00 < 9.30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9. 29.(목)
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영호 (044-203-4430)
		담당자	사무관	오재열 (044-203-4409)

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 · 지정이 쉬워진다

- 신청 횟수 확대 (연 1→4회), 지정 상한 면적 확대 (최대 30→50% 이내),
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 (전원 동의→3/4 이상 동의) 등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(네거티브 존) 신청·지정 절차 개선,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** 등을 위해 금일(9.30 금요일)부터 **'산업단지 관리지침**(고시)'을 **개정·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< 업종특례지구 개요 (네거티브 존) >

▸ (**제도 개요**)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

* 단,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확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

▸ (**도입 배경**)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,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며,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도입 ('20.5월)

※ 관련 규정 : **산업입지법**(제6조 및 제7조 등), **산업집적법**(제6조 제5항)

○ 금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**'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***'시 논의된 업계 등의 **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**이며, **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**하기 위한 조치이다.

* **장영진 산업부 차관**, 산단 입주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여 규제개선 사항 논의

□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(네거티브 존)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하여

○ 우선, **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**하고, 업종특례지구 지정을 위한 **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/4 이상 동의로 완화**하였으며,

- 네거티브 존 **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% 이내에서 50% 이내로 확대**하고, **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㎡에서 15만㎡로, 일반산단은 5만㎡에서 2.5만㎡로 축소**하였다.

○ 또한,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·장비 임대업 등 **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*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**에의 입주를 허용**하였다.

* 기계 및 장비 중개업(표준산업분류 46106),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(46533),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(46539),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등 총 4개 서비스업

** 산단 용도구역 : 산업시설구역(공장 등), 지원시설구역(상점 등), 공공시설구역(도로 등), 녹지구역

□ 이와 함께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**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·지원***하기 위해 기존 **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**하였다.

▸**(현행)**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.운영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

▸(**개선**)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**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**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

* 단,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% 이상이고 연면적(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)이 100%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**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**을 위해 **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원점(제로베이스, Zero Base)에서 전면 재검토**하고,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**"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"**이라고 설명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산단 네거티브 존 개요 및 산단 관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**

1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개요

○ (**배경**)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,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며,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도입('20.5월)

○ (**개념**) 산단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(산집법 시행령 제6조)

○ (**사례**) 산업단지 네거티브 제도 도입 후 김천1일반산업단지, 광양국가산업단지가 네거티브 산단 지정을 신청하였고, 현재 운영중

2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

구분		개정 주요 내용
업종 특례 지구	신청 및 지정 절차 등 개선	① **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신청 횟수 확대** * 연 1회 → 4회
		② **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** * 전원 동의 → 75% 이상 동의
		③ **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면적 확대 및 하한면적 축소** * 상한 면적 :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% → 50% 이내 * 하한 면적 : 국가산업단지(30만 → 15만m^2), 일반산업단지(5만 → 2.5만m^2) 등
	입주업종 확대	기계 및 장비 중개업(46106),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(46533),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(46539),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등 **4개 서비스업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허용**
농공단지 제도개선		농공단지 내 기존 입주기업이 **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**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**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** *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% 이상이고 연면적(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)이 100%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